

##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「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3일

파 주 시 장

### 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### 2. 개정이유

- 파주시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총괄 운영함에 있어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현행화하고 현장의 즉각적인 조치와 피해사항 파악으로 신속한 재난예방·대응·복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근무지 제한 규정 삭제(안 제7조제3항)
-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명칭 변경(별표 1)
- 파주시 자연·사회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협업 기능별 반명으로 명시(별표 2~별표 5)

### 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### 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3년 3월 23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<http://www.elis.go.kr>) '입법예고'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)

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안전총괄과(우 10932)

- 전화 : 031-940-5711 / 팩스 031-940-4679 / 이메일 [hyuk1027@korea.kr](mailto:hyuk1027@korea.kr)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

➔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